

		보 도 참	ュ	자	료	19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
금융위원회	보도	배포 후 즉시		배포	2017.12.28.(목)	* * * * * * * * * * * * * * * * * * *
책 임 자	금융위 전자금융과장 주 홍 민(02-2100-2970) 금융위 FIU기획협력팀장 손 성 은(02-2100-1730)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실장 임 채 율(02-3145-7850)		담 5	김 민 하 사무된 (02-2100-2972 이 영 민 사무된 (02-2100-1722 김 용 태 전자금융 (02-3145-7425		D-2972) 사무관 D-1722) 자금융팀장

## 제목:「가상통화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」개최

## I. 회의개요

- □ 금일 '17.12.28.(목) 14:00 **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** 주재로 「가상통화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」를 개최\*
  - \* 금융위, 기재부, 금감원, 은행연합회, 시중은행 관계자 참석
  - 최근 가상통화에 대해 금일 발표된 **범정부 대책의 후속조치**로 금융권 차원의 추가 대응조치를 점검하고자 마련

## **II. 주요내용**

- □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 부위원장은
  - 현재 주요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에는 은행권의
     가상계좌서비스가 이용되고 있는데,
  - 본래 아파트 관리비, 등록금 등 제한된 특정 목적의 집금 효율성을 위해 고안된 은행의 가상계좌서비스가 가상통화 거래의 매매 계정(trading account)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투기거래를 조장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저하시킨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
  - 오늘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「가상통화 특별대책」은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기존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중단하고, 실명 확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며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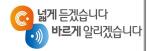
- 이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자와 취급업자에 대한 은행의 계좌통제를 강화하고, 의심거래와 불법자금세탁 방지 등 모니터링 기반을 확고히 하여 향후 가상통화 거래 과세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- 보다 세부적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현행 가상계좌
   서비스의 신규 제공은 즉시 중단해 주기 바라며,
- 현재 가상통화 취급업자에게 **가상계좌서비스를 제공중인 은행**도 더 이상 **가상계좌의 신규 회원을 추가**하는 것은 **중단**해 주시기 바람
- 아울러, 은행권은 실명확인시스템을 조속히 개발하고 현재 가상계좌 서비스 이용자가 신속히 실명확인시스템으로 계좌이전할 수 있도록 가상통화 취급업자와의 협의를 부탁드림
- 이와 함께,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지급결제
   서비스 운영현황에 대해 전면 점검에 나서주기 바람
- 점검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긴급조치대책\*(12.13일)을 따르지 않는 불건전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어떠한 형태의 지급결제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 등 엄정한 조치가 따라야 할 것임
  - \* 개인정보유출·해킹 등 위법행위는 엄정 대처, 본인확인, 미성년자· 비거주자 거래 금지 등
- 또한,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·매입·담보취득·지분투자 금지 등의 정부 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취급업자도 예금취급 금융회사에 통보해서 마찬가지로 은행권의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
- o 한편, 금융정보분석원(FIU)과 금감원은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일반 법인계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유의사항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
- 금융회사의 현행 가상계좌서비스가 제한된다면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규제차익을 노려 일반법인계좌를 이용하려는 유인이 한층 더 커질 것임

- 정부는 내년 1월중「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」을 마련하여 <sup>●</sup>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위험평가,<sup>®</sup>취급업자 식별 절차를 마련토록 하고, <sup>®</sup>다수와의 거액 거래 등 의심거래를 충실히 보고토록 하겠음
- 또한, 실명확인시스템이 마련되면 운영성과와 FIU·금감원의 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1인당 거래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앞으로 배제하지 않을 예정
- 이 새로운 실명확인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도록 취급업자와 은행들이 이용자에게 적극 안내하는 **홍보와 소통의 노력도 중요**함
- 시행초기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**금감원과 은행권 공동**으로 **T/F를 구성**하여 **후속조치에 만전**을 기울여 주기를 당부 드림
- 정부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가상통화의 가치를 보장하지 않으며, 투자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음
-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가상통화 거래에 치중하기 보다는 본연의
   목적인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보다 힘써야 할 것임
- 별도의 중간 관리기관이나 검증기관 없이 **P2P로 직접 연결**하는 **자기완결형 대안금융시스템**을 목표로 태동했던 가상통화가 **기존** 금융거래망에 의존해 서비스되고,
- '문지마 투기자'의 거래수수료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블록체인과 가상통화 출현의 이상과 부합된다고 보기 어려움

※ 별첨 : 부위원장 모두 발언

<참고> 가상계좌서비스 제공금지 관련 설명자료





## 가상계좌서비스 제공금지 관련 설명자료

- □ (가상계좌) 대량의 집금·이체가 필요한 기업 등이 은행으로부터 부여받아 개별고객 거래를 식별하는데 활용(법인계좌의 자(子)계좌 형태)
  - 가상계좌는 개별 가상계좌의 발급·관리가 은행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, 실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반계좌와 다름
- □ (조치의 취지) 아파트 관리비, 등록금 등 특정 목적의 집금 효율성을 위해 이용되는 은행의 가상계좌서비스가 가상통화 거래의 매매 계정으로 활용되어 투기거래를 확산하고 금융거래 투명성을 저하
- □ (조치내용) 가상통화 거래에 있어 가상계좌 활용을 금지하고,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'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'로 전환

세부 조치내용	설명		
<ul><li>↑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</li><li>가상계좌 신규 발급 전면 중단</li></ul>	취급업자 A 가상계좌		
② 기존 가상계좌 이용자(회원)의 계좌이전 작업을 신속히 진행	이전 가상계좌 → 실명확인 시스템		
❸ 기존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중단	기존 취급업자 B  기존 가상계좌  이전 실명확인 시스템  기상계좌		

- □ ('가상계좌 본인확인서비스'와 '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'의 차이)
  - 지난 9월, 「가상통화 대응방향」에서 발표한 '가상계좌 본인확인 서비스'는 '이용자 성명, 계좌번호'를 비교하여 거래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음
  - 지난 12.13일, 「정부 긴급대책」에 따른 청소년·비거주자 거래금지 등의 조치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'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'를 추진

- 이번에 발표한 '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'는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통화 취급업자(거래소)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서비스로서,
- 이름과 계좌번호 이외에 주민번호 비교가 가능하여 거래자가 청소년인지 외국인인지 구분할 수 있으며, 타행간 입출금 제한 및 자금세탁 등 불법의심거래에 대한 점검도 가능

< 참고 : 가상계좌/ 가상계좌 본인확인/ 실명확인 입출금 비교 >

명칭	가상계좌서비스	가상계좌 본인확인서비스	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
이용자 성명 대사	X	0	0
계좌번호 대사	X	0	0
입출금 동일계좌	X	0	0
주민번호·실명 대사	X	X	0
청소년 외국인 제한	X	X	0
타행간 입출금 제한	X	X	0
추가 제한조치(과세 등)	X	X	0

- □ (기대효과)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통화 취급업자 계좌간 자행거래만 인정함으로써 가상통화와 관련한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
  - o 청소년, 비거주자 등에 대한 가상통화 거래금지의 조기 시행
  - o 실명확인 및 자금세탁 등 **불법 및 의심거래**에 대한 **은행의 상시 점검**
  - o 향후 **가상통화** 거래에 따른 **과세목적의 자료 확보** 가능